

알 권리 VS 사생활 침해



글. 장현우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는 2012년 9월경부터 손해배상 전담부로 지정되어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다. 짧은 시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결정까지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길지 않은 시간, 중재위원들과 상의하고 숙고하여 나름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특히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피신청인인 언론기관들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무리 없이 접근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은 아주 험난하기만 하다. 특히 공적인물(이하 '공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나 공개된 장소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을 납득시켜 조정에 이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으며, 신청인의 침

해 주장과 대립되는 피신청인의 반박에서 우리 스스로도 사적 영역의 보도 한계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공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17조는 언론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라면 사생활 보호 보다 공중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결국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공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주로 1) 공적인물이다 2) 공공장소에서 취득한 내용이다 3) 이미 공중에 알려진 사실이다 등의 이유로 하여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최근 법원 판단을 받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생활 침해 한계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판결¹⁾)

당사자 관계와 보도경위

국내 유명 재벌그룹 대기업 대표이사 A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B와의 재혼

을 위하여 양가 상견례를 했다. 피고들은 이른바 ‘파파라치식 보도’를 표방하며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기자들이다. 피고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다 현장에서 상견례 사진 및 원고들이 나눈 대화,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상세히 설명한 기사 등과 함께 보도했다.

원고들이 공공에 알려지게 된 경위

원고 A는 국내 유명 여배우와 결혼했다가 이혼해 당시 공중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 후 원고 A는 원고 B를 알게 되어 언론을 통해 원고들의 열애설이 보도되고,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소제기 경위

원고 A, B는 피고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기자(사진)들이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양가 상견례 모임, 결혼 계획 및 데이트 내용 등 사적 사항과 원고 B 초상을 포함한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A, B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 위 판단은 대법원에서 2013. 6월 확정 되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피고들은 공인에 대한 보도로서 원고들이 수치심, 불안, 불쾌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써 새로운 내용의 보도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원고 B 초상 부분도 공공장소에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일단 피고들의 보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들은 원고들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원고 B의 초상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인정된 불법행위가 공인에 대한 공공 관심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가?

원고들의 결혼예정사실 등 ‘일반적인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사생활의 영역을 보도할 경우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없어진다. 원고 A는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유

명 여배우와 결혼을 하면서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어, 원고 A는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사생활은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 B 역시 원고 A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견례 사실, 결혼 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신혼집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B 기본적 정보 등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는 일부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 보도는?

피고들이 ‘몰래’ 촬영하거나 ‘몰래’ 엿들은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보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옷차림, 내밀한 대화 내용 등은 몰래 접근하여 대화를 엿듣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관심사라고 하여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적 영역을 몰래 촬영하면

항상 위법한가?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어야 한다. 나아가 긴급성과 중대한 공익뿐만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위의 기준을 보면 사적 영역에 대하여 무단히 침범하여도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인정된 손해배상 금원은?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술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로 인해 원고 A, 원고 B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초상권이 인정되는가?

초상권 침해 예외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하는 주장 중 하나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2)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즉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여기서 주목할 만한 관련 판단 기준이 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는 것이다(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앞에서 공인, 공적인 인물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공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관계에 대해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취재 대상이 공인이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취재·보도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언론에 대해 공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경우,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긴급성과 공공성이 있는지, 취재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생활 공개가 정당화하려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장하는 자(언론)가 입증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³⁾

3)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사생활
침해행위금지등